

보수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결대학교 교원 및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봉”이라 함은 교직원에 지급되는 기본 급여로서 본봉표에 표시된 월 본봉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본봉액과 연구보조비, 직급보조비를 합산한 액을 말한다.
3. “보수”라 함은 봉급 기타 각종 수당을 포함한 액을 말한다.
4. “보수의 일할 계산”이라 함은 당해월의 지급될 보수액을 당해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직원”이란 일반직 직원과 기술직 직원을 포함한 말이다.<2014.03.01.>
6. “수당”이라 함은 봉급외에 정액 또는 수시로 지급하는 각종 급여를 말한다.
7. “연봉”이라 함은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8.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9. “연봉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보 수

제3조 (보수) ① 교직원에게는 그 자격과 경력에 따라 보수로서 본봉과 연구보조비, 직급보조비와 기타 각종 제수당을 해당사항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교직원에 지급되는 월 보수는 매년 예산편성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보수지급일) 교직원의 보수는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당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25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조 (보수의 계산) ① 교직원의 신규채용, 복직, 승급, 승진,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1년이상

보수 규정(5-2-1)

근속한 자가 휴직, 면직, 퇴직의 경우 달에는 그 달 5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당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② 교원의 담당 강의시간이 규정된 책임시간에 미달할 경우에는 총장은 그 보수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휴직기간중의 보수) 휴직기간중의 보수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① 휴직기간이 만료되고도 복직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복직 후 휴직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학교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자는 휴직중 지급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제41조 1호 및 7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병역법 규정에 의한 징집의 경우,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기관,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 및 기타 기관에 고용된 때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본 대학 학교법인 정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직원외의 처우는 정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⑤ 공상 또는 특명에 의하여 휴가, 요양하는 자에게는 그 기간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⑥ 신병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집무하지 아니할 경우 총장의 허가에 의해 1월까지의 보수전액을 2월-6월까지는 보수의 반액을 지급하고, 7월부터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 (직위해제기간 중의 보수) ①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보수의 80%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을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6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에는 보수의 50%를 지급한다.

② 위1항의 결과가 기각된 경우 및 무죄선고를 받을 경우 기 지급된 보수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7조의 2 (직무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 ① 직무수행 중 부상으로 소정기간이 경과하여도 복직이 불가능하여 면직되는 교직원에게는 면직 해당월 보수외에 3개월분 월보수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② 교직원이 직무수행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규정에 따라 그 법정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 3 장 호봉획정과 승급

보수 규정(5-2-1)

제8조 (특호급) 교원 중 특호급으로 확정되는 장의 범위와 그 호급은 다음과 같다.

1. 총 장: 특1호

제9조 (기산호봉) ① 교원의 기산호봉은 다음과 같다.

1. 교 수: 15 호봉
2. 부 교 수: 12 호봉
3. 조 교 수: 7 호봉
4. 조 교: 2 호봉

② 직원의 본봉의 기산호봉은 그 급류나 등급의 초호봉으로 한다.

제10조 (초임호봉의 확정) 교직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 2-1, 2-2, 3에 의한 호봉으로 하되 경력이나 유사경력이 있는 교직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교원은 경력환산 경력수를 합산한 후 별표19에 의하여 가감하여 산정된 연수를 호봉으로 한다.
2. 직원은 경력환산 경력수를 합산하여 산정된 연수를 호봉으로 한다.

제11조 (승진시의 초임호봉) 직원의 승진시 초임호봉은 승진이전의 봉급액과 비교하여 그 차상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

제12조 (승급) ① 교직원의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승급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시행한다.

제13조 (승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이 되지 아니한다.

1. 휴직중인 때
2.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중인 때
3.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 가. 정직 : 12월
 - 나. 감봉 : 6월
 - 다. 견책 : 3월
4. 인사고과의 결과에 따라 근무성적 불량으로 판정되어 일정기간 승급제한이 결정된 때
5. 기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일정기간 승급제한이 결정된 때

제14조 (근속가봉) ① 교원이 특1호에 승급한 후 그 이상 승급되지 아니한다.

② 교직원이 그 급류나 등급의 최고호봉에 승급한 후 그 이상의 급류나 등급에 승급되지 아니할 때에는 교원은 35호봉과 34호봉의 봉급차액을, 직원은 해당 직급의 20호봉과 19호봉의 봉급차액을 1년마다 1회씩 가산 지급한다.

제15조 삭제(2004. 3. 1)

보수 규정(5-2-1)

제 4 장 수 당

제16조 (상여수당) ① 교직원에 대하여 학교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상여수당을 지급한다.

② 상여수당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계속 3개월이상 취업하지 않은 교직원은 제외한다.

제17조 (경리수당) ① 금전출납 및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경리수당을 지급한다.

② 경리수당은 봉급액의 120분지 10을 지급한다.

제18조 (보직수당) ① 수당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다.

총장, 부총장, 학장, 각 대학원장, 교목실장, 각 처(관)장, 부속기관장, 부설연구소장, 학부(과)장, 행정부서의 과장, 계장, 주임, 반장에 보직된 교직원에 대하여는 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보직수당은 별표 5와 같다.

제19조 (겸직수당) ① 겸직수당 지급 대상은 제18조 1항에 해당되는 보직을 겸임할 때 지급한다. 다만 서리 또는 직무대리일 때는 겸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직이 2이상을 초과할 때에는 1회 겸직수당만 지급한다.

② 겸직수당은 하위보직 해당 보직수당의 100분지 50을 매월 지급한다.

제20조 (조정수당) ① 교직원중 직위, 근속기간, 근무성적, 전문지식이나 기술 등 기타 특별한 사항을 고려하여 타 직원과의 보수 차이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조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매년 조정수당은 총장이 정하여 봉급에 가산 지급한다. 다만 조정수당은 봉급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21조 (정근수당) ① 교직원에게 근속년수에 따라 매년 3월과 9월을 기준하여 별표 6의 구분표에 의한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② 4월, 10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해당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재직중인 교직원중 계속 3개월 이상 근무한 교직원에게 지급된다.

제22조 (삭제 2012.03.01)

제23조 (연구보조비) ① 교원에 대하여는 연구분위기 조성과 교재연구, 학술연구를 위하여 연구보조비를 지급한다. 다만, 타직에 종사하거나 비정년트랙 교원은 제외한다.

② 연구보조비는 별표 7과 같다.

제24조 (직급보조비) ① 직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② 직급보조비는 별표 8과 같다.

제25조 (가족수당) ① 교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보수 규정(5-2-1)

② 가족수당의 지급범위와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제26조 (장기근속수당) ① 교직원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

② 장기근속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별표 10의 지급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27조 (자녀학비보조수당) ① 교직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2인 한도)을 지급한다. 다만 계속 3개월 이상 취업하지 않은 교직원은 제외한다.

②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3,4호에 의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매 등록시 등록금 전액을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급하며 별표 11과 같다. 다만 사립의 예·체능계학교, 외국어고 또는 외국인학교는 인문계 일반 중·고등학교에 준한다.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학비보조수당은 표 11과 같다.

④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삭제 2012.03.01)

제29조 (체력단련비) ① 교직원에게 체력단련비를 지급한다.

② 체력단련비의 지급방법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계속 3개월 이상 취업하지 않은 교직원은 제외한다.

제30조 (효도휴가비) ① 교직원에게 효도휴가비를 지급한다.

② 효도휴가비라 함은 추석, 민속의 날, 가정의 달(아버이날)로 구분하며 지급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제31조 (삭제 2012.03.01)

제32조 (삭제 2012.03.01)

제32조의 2 (초과근무수당) ① 근무시간외에 총장의 사전 서면 결재에 의해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야간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각종 수당의 지급범위, 지급방법 및 지급액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2조의 3 (연차수당) 공무상 규정에 의한 연차휴가를 허가할 수 없을 때에는 1일에 대하여 월 봉급액의 25분의 1의 150%를 지급한다.

제33조 (당직비) ① 직원 중 학교의 일반근무시간 이외에 특명에 의하여 당직근무할 경우 또는 근무시간이 심야근무에 해당될 때에는 당직비를 지급한다.

② 당직비는 별표 14와 같다.

제34조 (직무수당) ① 교직원에게 직무수당을 지급한다.

보수 규정(5-2-1)

② 직무수당의 지급방법은 별표 16과 같다.

제35조 (기술수당) ① 직원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에 근무하는 자로서 해당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게 기술수당을 지급한다.

② 기술수당은 별표 17과 같다. 다만 3개월 이상 취업하지 않은 직원은 제외한다.

제36조 (기타수당) 이 규정이 정하는 외의 수당은 총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5 장 연 봉 제

제37조 (적용대상 및 범위) ① 2002년 3월 1일 이후 신규 임용 된 교직원에 적용한다.

② 연봉제 적용대상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 제2장,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8조 (신규임용시 연봉 및 연봉한계액) 연봉제 적용대상 교직원의 연봉산정 기준봉은 임용직급에 따라 그 상한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지 급 금 액		비 고
	상한액	하한액	
교 원	15호봉 + 제수당	7호봉 + 제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경리수당, 기술수당, 호도휴가비는 연봉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 지급한다.
	연구보조비는 전임강사 금액으로		
직 원	15호봉 + 제수당	1호봉 + 제수당	

제38조의 2 (계약제교수의 보수) 계약제교수의 보수는 별도로 총장이 따로 정하는 계약금액으로 한다. 다만 계약제교수에게는 호도휴가비만 별도 지급한다.

제38조의 3 (강의교수 및 연구교수의 보수) 강의교수 및 연구교수의 보수는 별도로 총장이 따로 정하는 계약금액으로 한다.

제38조의 4 (비정년트랙 교원의 보수) 비정년트랙 교원의 보수는 별도로 총장이 따로 정하는 계약금액으로 한다. 호도휴가비는 연봉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 지급한다.

제39조 (연봉의 조정) 연봉액은 1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기간 1년후부터의 차기 계약 연봉액은 전기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제40조 (연봉의 지급)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제41조 (연봉 등의 계산) 연봉제 적용 교직원의 연봉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감봉, 기타 임용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2조 (세부사항)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외에 연봉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수 규정(5-2-1)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6 장 조교의 보수

제43조 (조교) 조교의 보수는 이 규정 별표중 교원본봉표의 해당금액과 연구보조비, 생활보조수당, 효도휴가비를 지급한다.

제44조 삭제(2004. 3. 1)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시행하던 보수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수 규정(5-2-1)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7조)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3조, 제24조)은 1999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연봉제 적용) 제5장(연봉제)은 2000년 3월 1일 이후 임용된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8조의 2, 제38조의 3)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보수 규정(5-2-1)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3조 별표 18)은 200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8조 별표 13)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0조 별표 2-1, 2-2)은 200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 38조의 4, 표 10, 표 21)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 제27조, 제36조, 표 12)은 200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3, 별표13, 별표 15)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표 12)은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표 11, 표22-2)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의2, 제8조, 제22조, 제28조, 제31조, 제32조, 제38조의4, 표 1, 표2, 표3, 표7, 표 13, 표 15, 표16, 표17, 표22-1, 표22-2)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수 규정(5-2-1)

② (경과조치) 제8조 2호에 의한 적용대상은 제6대 총장에 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표1, 표7, 표15)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교원(조교수)은 (구) 규정에 의한 보수를 적용하되, 부교수 승진시에는 (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표5)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10조 표3, 제16조 표4, 제24조 표8, 제36조 표18)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8조 표5)은 2014년 5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은 2014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8조 표5)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혁신센터장은 5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8조)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